

## 제7기 대학평의원회 제5회 회의록

- 일 시 : 2020. 8. 6.(목) 10:30~12:00
- 장 소 : 대학본관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김종훈, 이재설, 이용노, 이석민, 유창희, 전봉권

### ※ 회의 안건

-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김종훈 의장 기도)

의장: 간사께서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 정수 11명 중에 6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대학평의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차회의록 보고)

의장: 그럼 오늘의 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회의 안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안건: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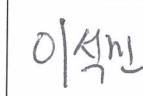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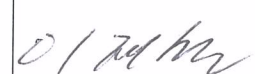
기획예산실장: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설명)

의장: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그러면, 제7조(학년도 및 학기)의 3항에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연학기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네. 유연학기제는 기존 8학기제가 아닌 1년 2학기제가 아닌 다학기제로 운영 할 수 있는 학기제입니다. 학칙에 유연학기제를 삽입하고 학칙시행세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 2: 제10조(입학)의 3항에 입학할 허가받은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간서명	김종훈		이석민		이재설	
-----	-----	---	-----	---	-----	---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등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네. 교육부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학할 시기 일정 기간 전에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은 유관부서에서 내부 결재를 득한 후 결정됩니다.

3: 제10조(입학) 2항은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에 관한 것이고, 3항은 재입학에 대한 표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2항은 입학허가 시기에 관한 개정이고 3항은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4: 제10조(입학) 2항의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할 허가는 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4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 내용이 중첩되는데 ‘그 시기는’ 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의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제10조(입학) 2항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 를 ‘그 시기는’ 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이재설 의원: 재청합니다.

▶: 유창희 의원이 제10조(입학) 2항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 를 ‘그 시기는’ 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동의하였고, 이재설 의원의 재청과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내용을 수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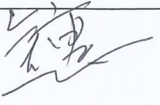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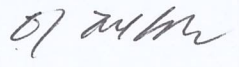
5: 제13조(재입학)의 재입학은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네. 재입학은 자퇴하거나 제적된 후 1학기 이상이 지난 학생이 해당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6: 제13조(재입학)에서 퇴학 등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입학이 강화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네. 현행 재입학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성폭력과 같은 사유로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도록 강화되었습니다.

7: 제17조(자퇴)의 경우 기존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학과장 및 학장을

간서명	김종훈		이석민		이재설	
-----	-----	---	-----	---	-----	---



거처 교무처장에게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자퇴 절차가 간소화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네. 학과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미 학생이 자퇴에 대한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8: 제24조(학사학위취득 유예)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1년 이내에서 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취업 시장에 나 서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1년 이내에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네. 해당 규정은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을 미루고 싶은 경우에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됩니다. 현재 업무는 내부 결제를 통하여 개정안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칙에 명시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나 추가 내용은 다음 대학평의원회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권 의원: 제24조(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다음 대학평의원 회의에서 기획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재설 의원: 재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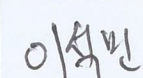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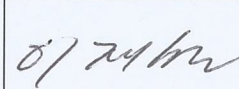
▶: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24조(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 하되, 다음 대학평의원 회의에서 기획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함.

9: 현재 학칙에 대한 개정에 따른 각종 관련 규정들도 제, 개정 및 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네. 교무위원회 연수에서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칙 개정과 관련된 규정을 전부 논의하였습니다.

10: 제47조(금지활동)에 이단종교활동 규제 개정과 관련하여 참조할만한 규정이나 타대학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네. 자체적으로 이단종교활동 규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대학 사례는 다음 대학평의원회의에 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서명	김종훈		이석민		이재설	
-----	-----	---	-----	---	-----	---

의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제47조(금지활동)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다음 대학평의원 회의에서 기획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노 의원: 재청합니다.

▶: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47조(금지활동)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다음 대학평의원 회의에서 기획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함.

11: 제52조(등록금 납부)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어느 규정에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네. 학칙시행세칙에 있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화 하였습니다.

12: 제55조(학칙 개정) 4항은 학칙 개정에 대해 기획처장이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개정 사유가 발생한 부서에 기획처도 포함되기 때문에 4항이 추가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학칙을 고등교육법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칙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획처에서 개정 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 개정안을 받아 개정을 진행한게 아니라 기획처에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한 내용입니다.

13: 제55조(학칙 개정) 3항을 통해서도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4항은 삭제하고 개정안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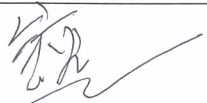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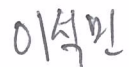

의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제55조(학칙개정) 4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수정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전봉권 의원: 재청합니다.

▶: 유창희 의원이 제55조(학칙개정) 4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수정하는 안을 동의하였고, 전봉권 의원의 재청과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55조(학칙개정) 4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수정함.

의장: 그러면, 「전주대학교 학칙」 수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공포합니다.

간서명	김종훈		이석민		이재설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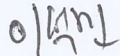



의장: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의 회의록에 대해서 간서명을 해주실 의원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훈 의장, 이재설 부의장, 이석민 의원께서 간서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대학평의원회 제5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간서명	김종훈		이석민		이재설	
-----	-----	---	-----	---	-----	---

2020. 8. 6.

위의 사실을 확인함.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김 중 훈	(인) 김중훈
부 의 장	이 재 설	(인) 이재설
의 원	이 용 노	(인) 이용노
의 원	이 석 민	(인) 이석민
의 원	유 창 희	(인) 유창희
의 원	전 봉 권	(인) 전봉권